

---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

2015. 6. 18.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해외 사례 .....	2
III. 도입 방안 .....	3
1. 소유구조 : 은산분리 완화문제 .....	3
2. 업무범위 .....	6
3. 자본금·사업계획 등 인가요건 .....	7
4.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	10
5. 전산설비 등 기타 고려사항 .....	12
6. 조치사항 .....	13
IV. 기대 효과 .....	14
V.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	15
1. 추진전략 .....	15
2. 향후계획 .....	16
[첨부1] '08년 도입 추진시 주요 논의내용 .....	17
[첨부2]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사례 .....	18

## I. 추진 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동안 두차례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
  - '01년 대기업(롯데, SK 등)과 벤처회사가 공동으로 설립 추진→ 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상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 등으로 무산
  - '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글로벌금융위기로 은행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 중단
- 최근 IT를 활용하여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논의 재개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
  - 우리도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금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

###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 >

- ◇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세계 최고인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리·수수료 등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
- ◇ 은행산업 경쟁 촉진 : 비대면거래 증가(90%이상) 추세 속에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보수적 영업행태 혁신의 자극제 역할
-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금융회사와 ICT기업, 핀테크업체 등이 제휴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신시장 개척
  - 국내에서 모델 정착 후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에 용이

-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1월부터 마련중
  -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15.1~4월중 주제별 심층토론(12차례), 공개 토론회(4.16), 금융개혁자문단회의(6.10) 등을 통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

## II. 해외 사례

### ◇ '90년대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유럽, 일본 등에서 영업 중

- \* 다양한 소유구조 : 은행계(주로 Division형태), 2금융권(증권·보험·카드) 회사, 기업계(유통, 자동차 등), 합자(은행+통신, 은행+포털)
- \* 영업모델 특화(Niche-Market) :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주로 영위중(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집중,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

### ◇ 대체로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업무범위, 건전성 규제 등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 적용

#### □ (유럽) 여러 은행이 사업부형태로 운영 중이며 역내 진출수단으로 활용

- \* EU는 특정 국가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 역내 다른 국가에서 은행업 영위 가능

#### ○ 은산분리 규제는 없으며,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진입 방지

- \* 영국 사례 : 10%, 20%, 33%, 50% 지분 초과시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 □ (일본) 대주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모델 운영 중

- \* Rakuten Bank(전자상거래 회사가 대주주) : 지급결제업무, Jibun Bank(통신회사가 대주주) : 모바일 banking

#### ○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통해 난립은 방지

-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를 5%로 제한 → '02년 20% 초과 소유 가능(정부 승인 필요), 50% 초과시에는 대주주의 은행건전성 확보의무 강화

#### □ (미국) 2금융·기업계(증권, 카드, 유통, 자동차 등) 주도로 사업모델 다양

#### ○ 산업자본이 일반은행 지분 25%까지만 보유 가능(실질적 지배 금지) → ILC제도\* 등을 이용하여 기업계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 \* Industrial Loan Company : 산업자본이 대주주 가능, 채권을 위주로 자금조달(요구불예금 제한) 또는 일정규모(1억불) 이내에서만 자산운용

### Ⅲ. 도입 방안

#### < 기본 방향 >

- ◇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 ◇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 ◇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 허용

## 1 소유구조 : 은산분리 완화 문제

### 가. 현행 제도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 초과\*\* 보유 불가

\*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geq$  전체자본의 25% 또는 비금융회사 자산합계  $\geq$  2조원

\*\*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

\* ICT기업 분류: portal, communication(통신), community(SNS, 메신저 등), e-commerce(전자상거래) 등

#### ※ 해외 사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유연하게 허용

- ① 유럽 : 별도의 은산분리 규율 없이, 건전성 차원에서 대주주 심사
- ② 일본 : 20% 초과시 사전승인, 50% 초과시 대주주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 ③ 미국 : 일반은행은 산업자본이 25%까지만 보유 가능(실질적 지배는 금지)  
→ ILC제도 등을 이용하여 기업계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 나. 추진 방안

◆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성공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일부 완화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 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일반은행 전반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소모적 논쟁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규제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특성상 거액의 법인 대출을 활발히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자본의 자금고화 가능성도 낮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불가피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ICT기업 등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당수의 고객(critical mass)을 조기 확보하는 등 경쟁력있는 수익모델을 구축한 경우에 주로 성공

○ 반면, 기존 은행 중심이었던 홍콩·싱가폴은 수익모델 부재로 대부분 실패

□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했던 일본도 규제수준을 완화하여 기업계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

- 미국도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ILC제도 등을 통해 기업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운영 중

※ 해외 성공사례

- Rakuten Bank(일): 전자상거래분야의 성공을 발판으로 은행업 진출 →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계좌수 확보(460만좌)
- Ally Bank(미): 자동차회사(GM)의 금융계열사로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 관련 서비스에 특화 → 미국내 예금은행 기준 29위 은행으로 성장

## 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방안

-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14말 기준 61개 기업집단 해당. 다만, 이 중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미적용(현재도 은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음)

-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하여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 유지

\*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사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 필요(상법 §434)

-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 강화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축소 :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 강화 :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 (변경) 금지

## 2 업무범위

### 가. 현행 제도

- 일반은행은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외은지점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범위 영위 가능

- 고유업무 :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 겸영업무 :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 부수업무 :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 나. 추진 방안

◆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

- \*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

-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유도

- 미국, 일본, 유럽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가시 일부 업무를 제한한 사례(예 : 사업계획 내에서만 업무영위)는 있음

- \* 법인대출은 여신심사 역량을 감안하여 스스로 취급하지 않는 등 법적 제약과 상관없이 일부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3 자본금·사업계획 등 인가요건

#### 가. 현행 제도

- 은행업 인가시 최저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 주주 구성(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 등), 사업계획, 인력 및 시설·설비 등의 요건을 심사
  - 금융위는 인가시 금융시장 안정,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나. 최저자본금 규모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 : 500억원
  -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 해외 사례 : 주요국의 법상 최저자본금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실제 설립시 투입된 자본금은 우리나라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상회

- 일본: [법정 최저자본금 20억엔(185억원), [설립자본금 Jibun Bank 200억엔(1,850억원)
- E U: [법정 최저자본금 5백만유로(60억원), [설립자본금 Uno e-Bank 8천만유로(960억원)

## 다. 사업계획 등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마련이 중요
  -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기초, 초기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감안시 설립후 수년간은 경영상 애로가 많을 수 있음
  - 특히, 다수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필요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투명하게 심사하는 방안 강구
  - (인가심사기준)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

### (1)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Stability)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 (3)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Consumer Convenience)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4)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Competitiveness)

-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외진출 가능성(Global Expansion)

-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또한,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 추가

- \* 예 :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함으로써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해외 사례 : 인터넷전문은행용 별도 인가심사기준 마련·적용

-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집중·운영·평판 위험 등을 감안한 인가기준 마련
- 일본: 비대면거래시 고객보호, 모회사 리스크차단 등을 인가시 추가확인사항으로 운영

○ (인가절차)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핀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 신설 인가이고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개별 건별·순차 심사 보다는 일괄신청·접수 후 일괄심사로 진행

## 4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 < 건전성 규제 >

#### 가. 현행 제도

-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운영 중
  - \* 주요규제 : (자본적정성) BIS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
- 다만, 은행의 인가형태에 따른 영업방식·규모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기준을 차등 적용 중
  -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Basel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Basel I 기준 적용 중
  - \* Basel I 방식에서는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 BaselⅢ 방식에서는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

#### 나. 추진 방안

- 자본규제 등 주요 건전성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적용하기 곤란
-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 인정(기간 경과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아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Basel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 I 기준 적용
  - 향후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예: 2조원이상(예대율규제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BaselⅢ 적용을 검토

○ 유동성(LCR) 규제의 경우에도 설립초기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 업무도 제한적이므로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 적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현금·국채 등 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적용한도(일반은행/특수은행, %): '15년 80/60 → '19년 100/100 적용(매년 5/10씩 상향)

- 다만, 일시에 예금 대규모 유출 등 유동성 위기시 모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 사업계획 제출시 동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추후 최종인가시 이를 부관으로 부과

□ 예금·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대출·유가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예대율(대출금이 예수금의 100%이내),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등

## < 영업행위 규제 >

### 가. 현행 제도

□ 은행은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 설명의무, 공시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 제한 등

### 나. 추진 방안

□ 일반은행과 동일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한 만큼, 일반 은행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 기준 적용

## 5 전산설비 등 기타 고려사항

### 가. 전산설비 위탁

- 설립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 등 감안시 IT전문업체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 허용(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규정상 가능)

\* 기존 금융회사도 IDC센터, 코스콤 등을 통해 일부 전산업무 위탁처리 중

### 나. 지급결제망 참여

-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 및 소액결제시스템(지로·전자금융공동망·CMS망 등)

-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직접 또는 간접참가\* 방식(기존은행 대행) 선택

\* 지준예치의무, 결제망 참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투자회사,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결제망에 참가중

### 다. 신용카드업 영위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확보할 필요(여전업인허가지침)

⇒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가기준의 예외 인정

### 라. 예금보험제도에 편입

- 예보법상 일반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최초 부보시 납입자본금의 1%를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매년 예금잔액의 0.08%를 예보료,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납부

\*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 출연금으로서 과거 금융위기 극복 등을 위한 비용분담 명목

## 마.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face-to-face)하여 실명을 확인받아야 계좌개설 가능(점포없는 은행 출현 제약요인)

⇒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

(15.5월 개선방안 발표, 금년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

- \* ①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4가지 방식에 준하는 방식”도 적용 가능)

## 6 조치 사항

- (은행법령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은산분리 완화, 업무범위, 자본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 < 법률 개정사항 >

- (정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이라고 정의
  - \* 물리적 영업점 설치 제한(기존 일반은행과의 차별화)
-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 : 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업무범위) 일반은행과 동일하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본금)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상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규정 : 1,000억원 → 500억원

### < 시행령 개정사항 >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비율 이내로 제한,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 (기타) 여전업인허가지침 등 관련 법규 개정

## IV. 기대 효과

- ◇ (금융소비자) 점포방문없이 은행이용 가능, 낮은 금리·수수료 적용
- ◇ (은행 산업)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 → 은행간 경쟁 촉진
- ◇ (국민 경제) IT·금융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 → 일자리 창출

### < 금융소비자 >

- 점포방문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예상

※ Hello Bank(프랑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

-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 WeBank(중국):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 < 은행 산업 >

-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

※ Rakuten Bank(일본):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 →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 < 국민 경제 >

-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시 추가 효과,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도 기대

※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2천여명의 고용 창출 사례, ING Direct(네덜란드): 적극적인 해외진출 → 독, 프, 이 등 6개국에서 사업영위 중



## V.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 1. 추진전략 (Two-Track approach)

- ◇ 조기출현 및 성공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
- ◇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

#### < 1단계 >

-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 인가
  - 법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는 Test Bed로 활용
    - 해외에서도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시험적으로 1개사만 인가후 시장 동향 및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 1~2년뒤에 추가 인가(미국, 영국, 일본)
  - ※ 은행법 개정 전이므로 인가시 부관으로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식을 통한 영업 제한(조건부인가 방식)

#### < 2단계 >

-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토록 유도
  - 시범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및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소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인가

## 2. 향후계획

### < 1단계 >

- 인가매뉴얼 대외공개(7월초, 7.22일 공개설명회(금감원))
  -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7~11월)
- 예상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9월중) → 예비인가 심사(10~11월)  
→ 예비인가(12월) → 본인가('16년 상반기)

### < 2단계 >

- 은행법 등 개정안 마련(6~7월) → 정기국회 논의
- 인가 신청 접수 및 예비인가(법 시행후 6개월 이내,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와 동일하되 인가소요기간 최대한 단축)

## 참고1 '08년 도입 추진시 주요 논의내용

- ◇ '08년 당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근거만 두고, 자본금 요건 및 영업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법안소위 논의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도입방안) 은산분리 등 당시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최저 자본금 요건 등 일부 요건 완화

### < '08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

주요 과제	내 용
최저 자본금 요건 완화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에 비해 높은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 (예: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
업 무 범 위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업무범위 설정 (예: 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고 객 확 보 상 어 려 움 해 소	금융실명법이 계좌개설시 대면으로 실명 확인토록하면 고객 확보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정무위 검토의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시 은행건전성의 추가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 무산

## 참고2

## 해외 설립 사례(설립 주체·형태 별)

설립 주체	설립 형태	인터넷전문은행 (본점 소재 국가)
은행	사업부	HelloBank(프랑스), Activo(포르투갈), Zuno Bank AG(오스트리아), First Direct(영국), Cahoot(영국), Smile Bank(영국), Icesave(아이슬란드), Kaupthing Edge(아이슬란드)
	독립 법인	WeBank(이태리), SBI Net Bank(일본)
	별도 법인연계 (주로 증권업)	ComDirect(독일), Boursorama(프랑스), BforBank(프랑스), Fortuneo(프랑스)
2금융권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Charles Schwab Bank(미국), Daiwa Next Bank(일본)
	보험 (저축예금 공략)	EGG Bank(영국), ING Direct(네덜란드), Skandia(스웨덴), Sony Bank(일본)
	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	American Express Bank(미국), Discover Bank(미국)
은행 + 산업자본	통신업체 제휴	Jibun Bank(일본)
	포털업체 제휴	The Japan Net Bank(일본), WeBank(중국)
산업자본	유통 (기존 고객기반 활용)	Tesco Bank(영국), Seven Bank(일본), AEON Bank(일본), Rakuten Bank(일본)
	자동차 (자동차금융 특화)	Ally Bank(미국), BMW Bank(독일), VM Bank(독일), Mercedes-Benz Bank (독일)
모험자본	특화 영업모델 개발	Fidor Bank AG(독일), AlderMore, CC Bank(영국), Holvi(핀란드)

※ 출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